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판단 기준을 약물 종류별 운전자의 혈중 약물 농도로 설정〉

■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966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 약물 운전 관련 판례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지아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6. 3. 31.
3. 회부연월일 : 2026. 4.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약물 운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기준을 약물 종류별 운전자의 혈중 약물 농도로 정하고, 약물 종류별 운전자의 혈중 약물 농도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략) <u><신설></u> ④ (생략)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1항에 따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기준은 약물 종류별 운전자의 혈중 약물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수치 이상인 경우로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제35호¹⁾는 약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정의하고,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음.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음.²⁾ 마약은 진통제, 마취제 등으로 사용되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진통제, 마취제 외에도 항불안제, 최면진정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2024년 의료용 마약류 효능별·성분별 처방 현황 >

구 분	효능 및 성분	환자 수(명)	처방건수(건)	처방량(개/정)
마약	진통제	2,688,660	9,698,520	71,078,488
	마취제	2,160,666	4,507,139	7,157,196
	진해제	602,437	2,467,631	39,412,834
향정신성의약품	진통제	306,874	704,818	2,126,645
	항불안제	6,088,665	40,667,758	921,210,085
	최면진정제	9,604,068	27,958,274	312,220,904
	마취제	11,711,758	14,461,240	17,812,902
	식욕억제제	1,100,905	4,811,705	219,236,691
	진해제	71,839	169,241	32,649
	항뇌전증제	1,361,972	10,860,668	246,137,461
	ADHD치료제	337,595	2,945,916	90,197,329
	항우울제	449	3,449	6,501

자료: KOSIS,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효능별·성분별 처방현황³⁾

- 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5. “약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출처 : KOSIS 홈페이지

의료용 등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이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6항⁴⁾에 따라 처벌받음.

참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약물운전 예방 안전수칙으로 ① 약 처방 및 구입 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가능 여부 확인, ② 처방전과 약봉투에 졸음유발, 운전금지, 운전주의 문구 확인, ③ 졸음유발 약 복용 시 충분한 시간간격 필요 및 운전 지양을 제시하고 있음.⁵⁾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기준을 약물 종류별 운전자의 혈중 약물 농도로 판단하도록 하고, 해당 수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약물운전 시 처벌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

다만, 경찰청이 2025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신경정신의학회,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검토한 결과 약물의 종류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F_45_004%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DT_145013_044%26vw_cd%3DDMT_ZTITLE%26orgId%3D145%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울산 북구 공식 블로그 2026년 2월 20일 게시물, “약물운전 예방 안전수칙 3가지 지켜주세요”
<https://blog.naver.com/usbukgu/224188976290>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수치화가 불가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의견임.

위 협의체의 논의결과와 같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기준이 약물의 종류, 개인의 생리적 특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해당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약물 종류별 운전자의 혈중 약물 농도 기준을 마련하는데는 많은 노력이 투입될 필요가 있어 보임.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설정과 달리 개정안에 따른 운전자별 혈중 약물 농도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많은 노력이 투입될 필요가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요건과 약물 운전의 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음주운전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약물 운전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정하고 있음.

<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의 요건과 기준 >

구 분	음주운전 ⁶⁾	약물운전
요건	음주	약물 복용 +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현행법: 미규정 개정안: 약물종류별 운전자의 혈중 약물 농도

6)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를 고려하면, 개정안의 내용을 입법화하는 경우에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기준인 약물 종류별 운전자의 혈중 약물 농도를 실제로 마련한 이후에 입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개정안 부칙은 이 법을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부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⁷⁾

참고로, 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약물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계속 연구하고 있으므로,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규정 방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나, 현 단계에서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그리고, 경찰청의 약물운전 단속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의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직선 보행, 한발 서기 등을 실시하고,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약물운전 간이시약검사⁹⁾를 실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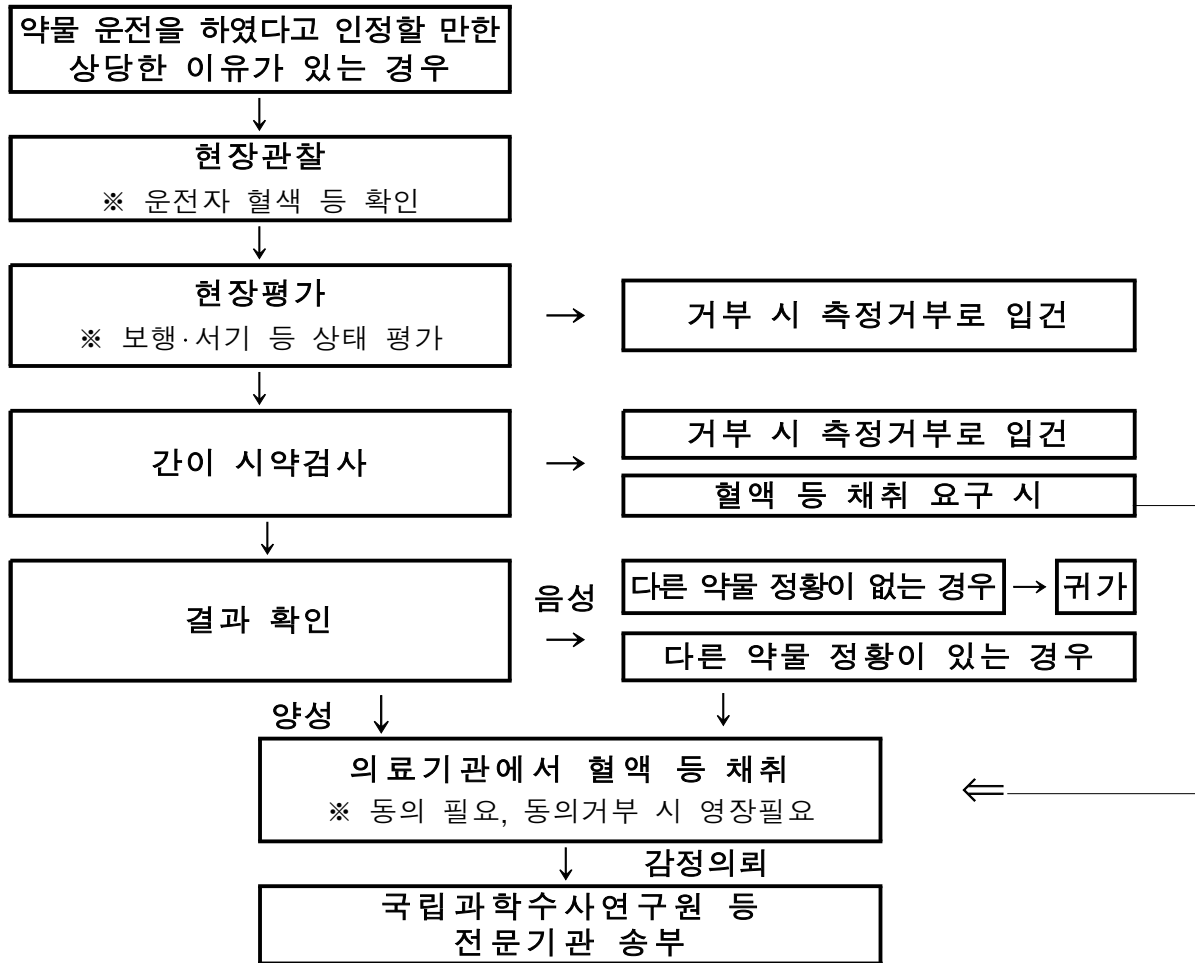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7) 한편, 약물운전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의 약물운전을 음주운전과 유사하게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 등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8)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약물운전 단속 약물 선정 및 줄피토템의 혈중 농도 기준 선정’ 연구를 진행 중이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6년 1월부터 ‘약물운전자 규제 적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9) 간이시약검사는 타액을 이용한 약물검사 간이시약기를 사용하고, 구강 내 검체 채취 약물 10종(필로폰, 암페타민, 대마, 코카인, 아편, 펜시클리딘, 부프레놀핀, 벤조다이제핀, 펜타닐, 옥시코돈, 트라마돌)의 복용 여부를 확인함.

< 경찰청의 약물운전 단속절차 >



※ 자료: 경찰청

문 의 처

02) 6788-5345

□ 약물운전 관련 판례(출처: 경찰청, 2026년 도로교통법 단속업무 해설서)

<유죄 인정 사례>

[1] 피고인이 차량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서 이를 투약한 사실, 그 직후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필로폰 투약의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수량을 투약하고 근접한 시간 내에 운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수원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5394 판결)

[2] 피고인은 요관 결석으로 처방 받았던 코노펜캡슐(코데인 포함)을 복용량(1회 1알)을 초과하여 2알 복용하였고 코데인의 약효는 일반적으로 4~6시간 지속되는바, 피고인은 코데인의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 내에 운전을 하였고, 운전 시작 무렵부터 비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넘어서 이미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임(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고정423 판결)

[3] 피고인은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을 복용하고 3시간 30분 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스틸녹스정 복용법에 의하면 성인 1일 권장량은 10mg이고 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약물 복용 후 7~8시간의 수면을 할 것을 권장하는데, 피고인은 스틸녹스정 3정 합계 30mg을 복용한 상태에서 불과 4시간도 채 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운전하였고, 목격자도 피고인 차량이 음주 운전자처럼 비틀거리며 갔다고 진술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임을 인정(광주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6노2464 판결)

[4] 피고인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치료를 위해 레메론 정, 스틸녹스 정을 처방 받고, 비만 치료를 위해 휴터민 정을 처방 받아, 사고 발생 전날 오전 휴터민 정(펜타민)을, 22~23시경 레메론 정(미르타자핀)을, 23~24시경 스틸녹스 정(졸피뎀)을 복용함. 복용지도서에 따르면 스틸녹스 정은 취침 전에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가능할 경우 복용하며 복용 후 8시간 내 운전 등 위험한 기계조작은 피하도록 안내되어 있고, 레메론 정은 1일 1회 복용하는 약으로 취침 전에 복용하며 운전은 피하도록 안내됨. 피고인은 오전에 펜타민을 복용한 상태에서 졸피뎀, 미르타자핀을 복용하고 7~9시간 후인 다음날 07:15경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운전 행태 및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임을 인정(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3. 5. 26. 선고 2022고정307 판결)

<무죄 인정 사례>

- [1] 약물 상습 투약자가 5일전 투약은 확인되나 사고 당일 투약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사고 이후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음에도 약물운전 무죄(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노2643)
- [2] 피고인이 교통사고 약 21시간 전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처방 받은 졸피뎀, 클로나제팜 성분의 약을 복용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행 상태가 정상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인 모습은 교통사고 직후 당황 등의 감정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약물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0. 8. 선고 2019고단1386)